「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81호)

ㅇ 2025. 6. 19.

ㅇ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5. 16.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21.

다. 상 정 일 자 : 2025. 6. 19.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 제안이유

○ 잠원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유도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서

○ 신중년층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며

❍ 이에 따라,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시설설치), 제5조(운영방식), 제7조(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 필요성 : 어르신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

다. 위탁사무 내용 : 잠원느티나무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노인의 문화・여가지원, 교육지원, 건강증진지원,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서초구 어르신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주소	면적	층수	개관	이용대상
잠원 느티나무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6 (잠원동)	399.8㎡	지상1층	2026년 하반기 (예정)	서초구민 (55세 이상)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26년 하반기 ~ 2031년 하반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295,000천원 민간위탁금 지급 예상

＊ 규모 및 운영내용이 비슷한 반포느티나무쉼터 '25년 운영 예산 기준으로 추계

- 인건비 : 122,426천원

＊ 3명 기준, '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사업·운영비 : 172,574천원

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붙임 참조)

▣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 '24.10월 : 잠원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4.10월 : 20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5.06월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6.03월 : 민간위탁 공고

○ '26.04월~05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6.07월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추진

○ '26.08월 : 공사 준공 및 개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충열)

▣ 느티나무쉼터

○ ‘느티나무쉼터’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과 신중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복합문화복지시설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의 공간에 머물렀던 데 반해, 느티나무 쉼터는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 지원목적의 노인복지시설이며,

○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우리구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느티나무쉼터를 마련한 것으로,

○ 위 쉼터에서는 실버체조나 요가, 건강기기 활동 등을 통한 신체 건강 지원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 바둑교실, 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이 병행되고 있고, 또한 인문학 강의, 자서전 쓰기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심리상담과 기억력 훈련 등 정신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는 5개소의 느티나무쉼터가 조성되어 있음.

▣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 본 동의안은 잠원느티나무쉼터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신규위탁 안건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의 위탁 대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느티나무쉼터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행정능률 향상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 더불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와 느티나무쉼터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1]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14조[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구청장은 노인과 구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5조[4]에서 “어르신복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5]에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같은

---

1)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4) **제5조(운영방식)** 어르신복합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어르신복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12조(위탁계약)**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그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음.

▣ 동의안 주요 내용 등

❍ 위탁시설의 주요 현황은 아래표와 같고,

주요 현황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시설 특징 및 내용	개관일
잠원 느티나무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6	399.8㎡	휴게라운지, 다목적체육실, 요가 및 피트니스실, 회의실 및 사무실 등	'26. 하반기 예정 (신반포 스포츠센터 준공 후)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 위탁내용 : 잠원느티나무쉼터 시설·인력·예산·사업·물품 등 관리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공간구성

연번	구분	면적㎡(평)	활용방안 및 기능
1	사무실	50.2㎡(15.2평)	운영사무실, 회의공간, 탕비실, 창고 등
2	다목적체육실	81.2㎡(24.6평)	건강증진 체육프로그램 운영(16인 이내)
3	탈의실(남,여)	16.6㎡(5평)	남녀 락커 16개씩 조성
4	프로그램실(대)	75.2㎡(22.7평)	인문 교양 프로그램 강의실(20인 이내)
5	프로그램실(소)	46.7㎡(14.1평)	인문 교양 프로그램 강의실(12인 이내)
6	휴게라운지	122.2㎡(37평)	시설이용 주민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 잠원느티나무쉼터는 ’26년 하반기 개관 예정에 있는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6]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수탁자 선정방식 또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있고,

○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위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다목[8]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라 할 것으로, 따라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9]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6)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7. (생략)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허. (생략)

9)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제1항[10]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적정)를 거쳐 본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잠원느티나무쉼터에 대한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규모 및 운영 내용이 비슷한 반포느티나무쉼터의 '25년 운영 예산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아래와 같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295,000천원 민간위탁금 지급 예상
※ 비슷한 규모인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금으로 추계

○ 산출근거

구분	금액(단위 :원)	주요내용
인건비 등	179,878,800	급여, 제수당(명절휴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기타후생경비)
업무추진비	5,760,000	기관운영비, 회의비
운영비	39,837,00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렌탈비, 사무용품비, 각종수수료, 보험, 직원교육비, 직원피복비, 특근매식비, 청소용역비)
재산조성비	10,469,200	시설장비취득비, 경비시스템, 방제, 수선비, 기타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59,055,000	상담사업, 프로그램 관리, 노년사회화교육사업 발표회,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비 등
합계	**295,000,000**	-

❍ 한편, 관내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5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도 수십여 건에 이르고 있는 등 활발한 사업 운영 현황으로 보임.

10) **제6조(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내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5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

시설명	내곡 느티나무쉼터	서초 느티나무쉼터	양재 느티나무쉼터	방배 느티나무쉼터	반포 느티나무쉼터
소 재 지	염곡말길9 (내곡동)	반포대로1길53-3 (서초동)	바우뫼로41길 72-9 (양재동)	남부순환로287길 17-4(방배동)	신반포로 127 (반포2동)
개 관 일	2017.01.25	2018.02.23	2018.02.28	2021.05.07.	2024.5.28.
운영형태	민간위탁 운영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2024.1.1.~2028.12.31)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021.03.18. ~2026.3.17.)	사)한국복지환경 디자인연구소 (2024.5.1. ~2029.4.30.)
규모	연면적 : 5,918.96㎡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697.22㎡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473.03㎡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535㎡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582.98㎡ (지상4층)
시설현황	4층 : 치매안심센터 3층 : 영화관, 북카페, 베이커리, 마음건강센터 2층 : 여가 교육실, 운영사무실, 심리상담센터 1층 : 늘봄카페, IT체험존 지하 : 헬스텍	4층 : 건강키움터 3층 : 경로당 2층 : 여가교육실 1층 : 반딧불센터 지하 : 헬스텍	4층 : 동아리방, 운영사무실 3층 : 경로당 2층 : 여가교육실 1층 : 늘봄카페 지하 : 헬스텍	4층 : 북카페, IT융합교육실 3층 : 여가교육실, 운영사무실 2층 : 경로당 1층 : 늘봄카페 지하 : 헬스텍	5층 : 강당, 자치프로그램실 4층 : 반포느티나무쉼터 3층 : 자치프로그램실, 회의실 2층 : 만원실, 동장실 1층 : 도서관, 라운지
종사자수	21명			3명	3명
위탁비용	1,529백만원(구비)			308백만원(구비)	295백만원(구비)
프로그램수	58개	25개	18개	25개	21개
정보화	스마트폰, 디지털드로잉, 생활앱활용, 유튜브 중급 등	스마트폰 초급, 중급, 스마트폰 동영상편집 등	유튜브제작실습, 스마트폰, 영상편집 등	스마트폰, 키오스크, 유튜브 영상편집 등	스마트폰영상제작. 챗지피티, 블로그만들기, 디지털자서전 등
건강증진	근력스트레칭, 힐링요가, 라인댄스, 모델워킹 등	라인댄스, 훌라댄스, 필라테스, 허리운동 등	요가, 라인댄스, 시니어발레, 태권도 등	필라테스, 실버요가, 모델워킹, 발레핏 등	스트레스해소운동, 시니어요가,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시니어핏 등
교양교육	일본어, 손뜨개교실, 바리스타 자격취득, 영어회화 등	스페인어회화, 영어회화, 일본어 등	책낸다, 동화구연, 일본어 등	역사문화산책, 영어회화, 시니어바리스타 등	일어회화, 감동스피치, 수필쓰기 등
문화예술	바이올린, 하모니카, 아코디언, 칼림바 등	보태니컬아트, 캘리그라피, 드로잉 등	보태니컬 아트, 수채화	보타니컬아트, 오페라산책 등,	시니어모델, 보컬트레이닝, 연극, 플랜트인테리어, 통기타 등

▣ 민간위탁 적정성

○ 본 동의안의 잠원느티나무쉼터에 대한 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시설관리(시설물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조직관리(조직·인사관리,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예산관리(예산·회계·결산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사업내용(노인의 문화 · 여가지원, 교육지원, 건강증진지원,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물품 등 기타관리(물품 및 재산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 발굴 등) 등의 사무는,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잠원느티나무쉼터가 수행해야 하는 각 해당 기능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 아울러 위 위탁사무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으로,

○ 이에 잠원느티나무쉼터 운영과 관련하여는 그 종사자 자격기준에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건강지도사, 프로그램 강사 등 해당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닌 점, 이의 운영에는 전문지식 및 관련 기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이 필수적인 점,

잠원느티나무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느티나무쉼터 등 관련 시설이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종합해 보면,

○ 본 민간위탁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더불어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시설서비스 공급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성 확보 등 필요에 따른 적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사업 운영 실적과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성과 더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잠원느티나무쉼터 운영의 활성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문화 · 여가와 교육 및 건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잠원느티나무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